

2018년 강원도개발공사 직원채용 공고

“지역 개발사업을 통한 도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꿈을 펼칠 열정 있는 “신입/경력사원”을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.”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지원구분		채용 분야	인 원	지원직무
신입	일반	기술	2명	건축 1명, 토목 1명
		행정	2명	경영관리 2명
	고졸 기능인재 추천채용	기술	1명	기계/전기 1명
	장애인 특별 채용	행정	1명	사무보조 1명
경력	프로젝트 계약직	기술	6명	건축 4명, 전기 1명, 기계 1명

2. 근무조건

구 분		직급	근무시간	근무지
신입	일반 채용	정규직 6급	주 40시간	본사 또는 강원도내 사업소
	고졸 기능인재 추천채용	정규직 7급	주 40시간	평창 알펜시아 동계스포츠 경기장
	장애인 특별 채용	정규직 7급	주 20시간 (시간선택제 일자리)	본사
경력	프로젝트 계약직	프로젝트 계약직	주 40시간	강원도내 사업소

※신입직원의 경우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침

※임금수준

- 신입직원 : 공사내규에 따른 해당직급 초임(군경력에 한하여 가산)
- 경력직원 : 공사내규 환산경력에 따른 연봉

3. 응시자격

가. 신입사원 응시자격

(1) 공통 사항

- 우리공사 결격사유(붙임 1)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청년고용 촉진 : 공고일(2월 22일) 현재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
- 강원지역 제한 :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, 공고일(2월 22일)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

(2) 채용분야별 응시자격

구 분		응 시 자 격
일반 채용	건 축	○ 건축기사 소지자
	토 목	○ 토목기사 소지자
	경영관리	-
고졸 기능인재 추천채용		○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
장애인 특별 채용		○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
나. 경력사원 응시자격

(1) 공통 사항 : 우리공사 결격사유(붙임 1)에 해당하지 않는 자

(2) 채용분야별 응시자격

구 분		응 시 자 격
프로젝트 계약직	건축/기계	○ 해당 분야 중급기술자 이상
	전 기	○ 해당 분야 특급기술자 이상

4. 가산점 : 붙임 3

5. 전형절차



가. 응시원서 접수

- 공고기간 : 2018. 2. 22(목) 부터 ~ 3. 12(월) 까지
- 접수기간 : **2018. 2. 23(금) 부터 ~ 3. 12(월) 까지**
(등기우편 3. 12(월) 도착분까지 유효)
- 접수방법 : **우편(등기) 및 방문접수 (e-mail 지원 불가)**
- 접수처 :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 강원도개발공사 인사총무팀
채용담당자 앞 (우편번호 24327) (문의 : 033-259-6224)
- 제출서류

구 분	응 시 자 격
공통	① 입사지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고졸 기능인재 추천채용	④ 학교장 추천서 ⑤ 성적증명서 ⑥ 졸업증명서

나. 필기시험 : 인성 및 NCS직업기초능력평가

- 대상자 : 신입사원 채용 응시자 중 1차 서류전형 합격자
- 일 자 : 2018. 3. 18(일) 예정
- 확정일시 및 장소 : 추후공지예정(개별 문자통보 및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고)

다. 면접시험

- 대상자 :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
- 일 자 : 2018. 3. 22(월) 예정
- 장 소 : 우리공사 1층 대회의실

○ 제출서류

구 분	응 시 자 격
공통	① 교육사항 입증서류 ② 자격사항 입증서류(신입 기술직의 경우 건축기사/토목기사 자격증 사본 필수 제출) ③ 경력사항 입증서류(프로젝트 계약직의 경우 해당 분야 기술인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 증명서) ④ 채용가산점 증빙 서류(해당자에 한함) ⑤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재분) 1부
신입 채용	⑥ 강원지역 제한 응시자격 입증서류 (강원도 소재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)
장애인 특별채용	⑦ 장애인등록증(국가유공자증, 보훈보상대상자증) 사본

라. 최종합격자결정

- 합격자 발표 : 2018. 3. 28(수) 개별 통지
- 제출서류

구 분	응 시 자 격
공통	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증명사진

마. 임용 예정일 : 4월 2일(월)

※ 경력직 경우 서류전형을 통하여 면접진행 후 채용진행이 이루어 지며(별도 일정, 필기 없음),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연기 될 수 있습니다.

6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오기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무효 및 합격이 취소 처리되며, 임용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채용 관련 인사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.
- 채용예정 인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채용일정은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 후 30일 이내 응시자가 반환 청구한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(청구 후 14일 이내, 반환비용 청구인 부담)하며 반환 청구하지 않은 채용 서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됩니다.
- 기타 근로조건 및 연봉, 채용절차 등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(033-259-6224) 앞으로 문의 바랍니다.

2018년 2 월 22일

GDC 강원도개발공사

붙임 1. 직원의 결격사유 (인사규정 제14조)

1.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9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10. 입사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경력, 학력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
11. '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'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

붙임 2. 기능인재 추천 자격요건 :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

가. 학력사항

- 채용 관련 학과가 설치된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의 해당학과 졸업자(졸업일 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내인 자)
- 소속(이수)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% 이내인 자

나. 추천제한

- 2년제 이상 대학의 재학, 휴학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추천불가 (공고일 이전 대학중퇴는 추천가능)
-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

다. 관련학과 : 기계·전기분야의 졸업자로서 해당기능사 소지자

라.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인 자

마. 추천 상한 인원

학과별 정원	100명 이하	101명 이상
학과별 추천인원	1명	2명 이내

※ 학교별 최대 추천 인원 : 학과별 추천인원을 합산하여 총 3명까지 가능

※ 학과 :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

※ 학과별 정원 : 응시자가 적을 두었거나 두고 있는 학과의 추천당시의 정원

붙임 3. 직원 채용시험 가산점수

구 분	세 분	가산점수 및 부가점수	비 고
국가유공자/ 독립유공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와 동조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	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 각 시험별 만점의 10%	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 적용
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자와 동조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	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 각 시험별 만점의 5%	
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	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 각 시험별 만점의 3%	상동
북한이탈주민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	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 각 시험별 만점의 3%	상동
다문화가족 구성원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	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 각 시험별 만점의 3%	상동
자격(면허) 소지자	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기사1급 이상	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%	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1종 이상인 경우는 1종만 적용